

#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 (경유)

제목 혹한기 간이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

- 1. 관련: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)
- 2. 혹한기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운용기준을 안내하오니, 건설현장 점검·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 관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**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및 해체**에 **소요되는 임대비용**\*은 **한시적(12월~2월)**으로 **사용가능** 
    - \* 천막,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(설치 및 해체비용), 컨테이너(임대비용)
  - ※ 간이 휴게시설이란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어 동상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된 작업장소 인근에 컨테이너, 천막 등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통상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휴게시설과는 다름
  - 나. 간이 휴게시설의 내에서 근로자의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**난방기기** 의 임대 비용(단, 근무환경 개선, 시공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용 불가). 끝.



수신자 청지청 건설산재지도과(산재예방지도과, 팀), 고용

전문위원 해정사무관 이**덕원** 과장 **전**결 2023. 11. 27. **이경근** 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4496 (2023. 11. 27.) 접수 건설산재지도과-7111 (2023. 12. 4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42 팩스번호 044-862-8075 / csilver55@korea.kr / 대국민 공개